



FTA TRADE REPORT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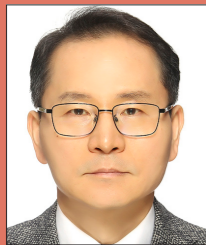
원산지 관리, 현장의 목소리

FTA 원산지 수입검증 사례연구





FTA 원산지 수입검증 사례연구*



한일권
부산세관FTA검증과장
경남대 겸임교수

* 저자가 한국무역학회지 제48권(2023.12월)에 게재한 "관세당국의 FTA원산지검증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2023년까지 21건, 총 59개국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FTA 체결국과의 무역 비중은 78.4%를 차지하며 FTA 활용률은 2023년 수출과 수입 모두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FTA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에 있어 사후 검증의 위험성이 있다. 다시말해서 상품이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이어야 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1 원산지검증 체크리스트

요건	내용	성격 ¹⁾
거래당사자	체약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생산자	형식
품목요건(HS)	관세인하 또는 철폐하기로 합의(양허)한 품목	
운송요건	제3국 경유없는 직접운송의 원칙	
원산지증명 및 특혜적용신청요건	적법하게 발급(작성)된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이어야 하고, 협정관세적용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실질
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가 체약국임을 판정하는 기준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는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²⁾을 통해 검토된다. 관세당국은 수출입업자 등 검증 대상자에게 협정 또는 국내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해 서면으로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수입자에 대한 검증의 경우, 원산지 충족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해외 거래처인 수출자(제조자 포함)를 대상으로 국제검증³⁾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검증업무는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입 방지와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 탈루를 방지할 목적이며, 국내에서는 정부기관 중에서 관세청에서 유일하게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검증 대상이 되는 절반 정도의 기업은 원산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원산지검증 대상 기업은 원산지 위반 위험 기업으로써 사전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조사가 착수되고, 실제 검증 결과

1) 특혜요건별로 형식과 실질로 구분하는 것은 관세행정 실무적인 구분을 차용한 것으로, 형식적 요건의 경우 위반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곧바로 특혜배제가 가능한 요건들이라는 관점에서 편의상 구분하여 명명
2) FTA협정에서는 「원산지검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FTA협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에서는 「원산지조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검증」과 「조사」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 연구서에서는 FTA협정에 입각하여 가급적 「원산지조사」보다는 「원산지검증」으로 기술
3) 검증방식에 따라 직접과 간접으로 나눌 수 있고, 칠레,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FTA처럼 직접검증의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관세청에서 직접 검증을 수행하게 되고, EU, 아세안, 중국등과의 FTA처럼 간접검증의 경우에는 수출국 검증당국에 검증을 의뢰하는 형태로 수행

의 다수가 위반으로 판정되고 있는 것은 FTA체결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업체의 입장에서 사후검증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년간 한국 관세청이 실시한 원산지 검증업무중 수입검증에 대하여 조명⁴⁾하고, 그중에서 세관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종결된 한-중 FTA 사례를 분석하여 관세청의 검증행정의 흐름과 주요 특혜배제 사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특혜배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입업체에게 유의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FTA 원산지 수입검증 프로세스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원산지 수입검증 업무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당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⁵⁾ 다만, 수입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첫 서면검증 이전에 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업체) ② 관세조사 중인 업체 ③ 관세법시행령 제135조의 4의 소규모 성실사업자⁶⁾ ④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⑤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는 FTA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제공하여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율점검」 단계를 운영하고 있다.⁷⁾

자율점검 단계에서 수입자가 제출한 자율점검표에 의거하여 원산지 위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에는 종결처리되나,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FTA관세특례법 제17조에 규정된 원산지검증 착수가 이루어진다.

4)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수출검증업무도 있음.
5) FTA관세특례법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항
6)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규정으로서 다음의 2가지 요건(①최근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②최근 4년 이내에 수출입관련 법령위반으로 통고처분이나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관세 및 내국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세관장으로부터 추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충족하는 기업
7)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자율점검)



원산지검증이 시작되면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검증이 시작된다. 먼저 국내서면과 현지검증을 거친 후,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검증까지 진행되는데, 국제검증이 직접검증인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직접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종결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은 반면,⁸⁾ 간접검증인 경우에는 평균 소요기간이 17개월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관세청, 2022). 이는 협정별 간접검증에 대한 회신기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체약상대국 검증당국으로부터 회신기한은 최소 30일부터 최대 15개월까지 매우 상이하다. 이에 따라 원산지검증 소요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기도 한다.

표 2 간접검증에 따른 협정별 회신기한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15개월	2개월	3개월	10개월	150일	10개월	150일	30일
베트남	중국	중미	영국	인니	이스라엘	RCEP	캄보디아
6개월	6개월	150일	10개월	2개월	10개월	90일	90일

3. FTA 협정별 원산지 수입검증 현황 분석

FTA협정별로 수입검증 현황을 분석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도 총 2,306업체에 대한 수입검증이 종결되었고, 1년 평균 577건을 처리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위반비율은 52%이다. 처리건수 100건 이상 종결한 협정을 보면 EU(572건), 중국(509건), 아세안(376건), 미국(296건), 캐나다(191건), 인도(110건) 순이며, 6개국의 검증건수가 전체의 약 90%에 달한다. 4개년 전체 고르게 위반율의 평균치 보다 높은 협정은 한-중 FTA이다.

8) 직접검증을 통한 국제서면검증시 자료제출기간은 칠레(제5.8조), 싱가포르(제5.7조), 콜롬비아(제3.25조), 호주(제3.23조, 제3.24조), 중미(제3.25조)의 경우 30일, 페루(제4.8조), 뉴질랜드(제3.24조)의 경우는 90일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9) APTA(일방특혜), 비특혜와 관련된 검증은 제외하고 FTA협정에 한정하여 집계된 통계임

표 3 FTA 원산지 수입검증⁹⁾종결 현황 분석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개년 합계	
검증 건수	위반 건수	검증 건수	위반 건수	검증 건수	위반 건수	검증 건수	위반 건수	검증 합계	위반 건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557건	236건 42%	746건	400건 54%	571건	324건 57%	432건	236건 55%	2,306건	1,196건 52%

자료 : 관세연감(2023)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원산지규정 위반사유와 그에 따른 추정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산지 위반이 가장 빈번한 것은 실질요건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즉, 형식적인 위반요소 검증에서 실질적인 위반요소 검증으로 검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거래당사자요건 위반의 경우 미인증수출자 및 비당사국(제3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타의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보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상대국이 미화신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 4 수입검증 결과 적발된 원산지규정 위반사유별 추정액

(단위: 백만 원)

위반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년 합계		업체당 추정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원산지 결정기준	108	18,744	233	23,617	131	9,172	121	16,340	593	67,873	114.5
품목요건	69	4,431	99	5,561	106	15,098	38	3,002	312	28,092	90.0
거래당사자 요건	20	5,268	27	3,430	5	1,384	2	86	54	10,168	188.3
직접운송 요건	-	-	3	1,881	1	9	-	-	4	1,890	472.5
기타	17	510	18	778	51	1,074	30	2,134	116	4,496	38.8
합계	214	28,953	380	35,267	294	26,737	191	21,562	1,079	112,519	104.3

자료 : 관세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한중FTA 수입검증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최근 원산지검증의 종결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관세청에서 수행하는 원산지검증의 장단점과 한계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데이터는 전국세관 원산지검증부서 조사자료를 취합한 데이터베이스인 V-Map을 활용하였다. 분석사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개년 동안의 종결 건을 대상으로 하며, 협정별로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HS)별로 수입검증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한 후, 한-중 FTA의 특혜배제 건 총 557건에 대한 세부 분석을 수행하였다.¹⁰⁾

한-중 FTA를 대상으로 산업별 특혜배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557건 중 형식요건에 따른 특혜배제가 474건으로 전체의 85.1%를 차지하였으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따지는 실질요건에 따른 특혜배제는 83건으로 14.9%를 차지하였다. 즉, 실질요건보다는 형식요건이 약 6배로 월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중 FTA가 발효된지 2년차인 2017년도부터의 검증인 관계로 형식적 요건위반이 실질적 요건위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협정발효 연차가 늘어날수록 형식적인 요건위반에 대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5 한-중 FTA 산업별 특혜배제 현황(2017~2021년)

구분	서류 보관	결정 기준	실질 요건	형식 요건				총합계	비중
				C/O	HS	서류 보관	형식 요건		
농식품	1	51	52		34		34	86	15.4
화학		8	8	5	66		71	79	14.2
섬의류				7	124		131	131	23.5
금속		2	2		33		33	35	6.3
철강		4	4	2	15	1	18	22	3.9
기계		13	13	1	163		173	186	33.4
수송기기					1		1	1	0.2
정밀기기		4	4		13		13	17	3.5
총합계	1	82	83	24	449	1	474	557	1.0

주 : HS코드 분류 중 농식품은 제1,2,3,4부, 광물 제5부, 화학 제6,7부, 섬의류 제11,12부, 금속 제13,14부, 철강 제15부, 기계 제16부, 자동차 등 수송기기 제17부, 정밀기기 제18부를 의미함

자료 : 관세청 내부자료(V-Map)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 한-중 FTA는 수입된 검증 건이 가장 많고,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HS코드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종결사례로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5. 수입자 등 무역업체에 대한 시사점

특혜배제 사유 분석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 요건 위반으로써 품목분류 위반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FTA 협정에 따른 특혜대상 물품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검증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¹¹⁾ 둘째, 물품의 특성상 기계류(16부, 제84류와 제85류)의 특혜배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특혜배제 건수 중 기계는 33.4%로 186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기술개발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전자기기가 등장함에 따라 품목분류의 쟁점이 많이 있는 부(Section)이기도 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품목분류의 정합성을 위한 노력이 검증단계에서 중요함을 의미한다.¹²⁾ 셋째, 실질요건 위반은 농식품 산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완전생산기준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넷째, 서류보관의무 위반에 따른 특혜배제이다. 물론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2건에 그치나 이는 거래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인 수출자(생산자)가 지속적인 경영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부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¹³⁾

형식적인 요건의 배제사유는 크게 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요건, 서류보관요건으로 구분된다. 이중 특혜대상물품인지 여부를 따지는 품목분류요건을 위반한 건수(449건)가 특혜배제의 전체건수(557건) 대비 81%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형식적인 요건으로서의 FTA협정에서 허용된 특혜대상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품목요건 위반은 대부분 품목분류번호의 오류나 품목분류의 잘못에서 기인하는데¹⁴⁾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적용하는 HS 번호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그중 하나이다. 즉, 원산지증명서는 주로 수출국의 기관이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하는 HS 번호는 대부분 수출국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협정관세

11) 협정관세는 협정당사국간에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기로 합의(양허)한 품목에 한해서 적용함. 따라서 협정관세는 협정별로 정한 특정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고,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로 품목과 적용되는 세율도 상이할 수 있음.(이영달, 2019, p.128) 품목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수입자의 오류, 품목분류체계의 문제, 수출자의 신고 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음

12) 제84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면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이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가 40% 또는 45% 이상 실현되어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부가가치기준이 설정됨. 제85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택일하는 선택기준을 두고 있고, 예외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두고 있음

13) 국제검증 과정에서 중국 내 수출자가 폐업의 사유로 원산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특혜가 배제된 사례임. 이에 더해 수입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체약상대국 검증당국으로부터 회신이 되지 않거나 회신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수입관세당국의 현지검증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임

14) 실제로 품목요건의 위반으로 특혜배제된 건을 분석한 결과 FTA협정에서 특혜품목으로 분류된 물품번호(HS)으로 신고하였다가, 검증과정에서 특혜대상 품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는 수입국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번호를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거나, 한국의 HS번호 체계에 맞춰 세번을 확정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사후 원산지검증과정에서 품목요건 위반으로 추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2차적인 문제도 연계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한국의 정확한 세번이 무엇인지에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FTA관세특례법 제3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원산지입증 서류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지고 있다는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제 활용에 한계가 있다.¹⁵⁾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사전심사제도(관세법 제86조)'를 활용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HS 번호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수는 미미했으나, 거래상대방인 해외수출자(생산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국제검증 단계에서 원산지 입증자료의 제출이 되지 못하여 특혜배제 처분을 받은 사안도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 교섭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의 경영 지속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관세청에서 수행한 수입물품에 대한 FTA원산지검증종결 사례 연구를 통하여 수입자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관점에서 한차원 높은 생생한 FTA 정보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5) 체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도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무역거래 체결단계에서 활용할 여지는 있다.